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64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동물진료 광고의 제한 및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3. 5.

다. 회 부 일 : 2025.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가 확산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동물진료 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동물 보호자나 소유자가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동물진료 광고의 제한 및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허위광고, 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대한수의사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등의 광고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3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조의2(광고의 제한 등)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진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1.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동물병원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4.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5. 동물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6.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

현행	개정안
	<u>용의 광고</u> 7. <u>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u> 8. <u>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u> 9. <u>제2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u> 10. <u>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동물의 복지 및 건강증진과 건전한 동물진료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u> ② <u>동물병원 개설자의 광고에 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수의사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u> ③ <u>동물병원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동물진료 등의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가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u>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

현행	개정안
	<u>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u> 2.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u>전광판</u> 4.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u> 5. <u>그 밖에 매체의 성질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u> ④ <u>동물병원 개설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u> 1. <u>동물병원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및 소속 수의사의 성명</u>

현행	개정안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제39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설></u>	2. 동물병원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가 정한다. 제38조(수수료)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 4.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동물병원개설자

최근 상당한 비율의 국민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게 되면서 동물의료를 포함한 펫헬스케어 시장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음.¹⁾

【 반려동물 양육비율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율(%)	23.7	26.4	27.7	25.9	25.4

※ 주: 본 통계는 국가승인통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통계청과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본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음

※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연도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그러나 「의료법」에서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거짓 광고 등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²⁾

동물진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의사법」과 동법 시행령은 수의사의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사후적인 제재 규정만 마련하고 있을뿐,³⁾

1) 정부에서 2023년 8월 9일에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에 따르면, 펫헬스케어 시장은 연 11%대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2022년 기준 국내 펫헬스케어(동물의료 포함) 시장 규모는 2.6조원으로 나타남.

2) 참고자료1. 유사 입법례 참조

3) 「수의사법」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

6.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②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광고 자체에 대한 사전 심의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동물의 소유자 등이 허위광고, 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대한수의사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정안은 무분별한 과대과장 광고 및 비윤리적인 광고 등을 수의사회가 자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광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위반 관련 논란도 피할 수 있는 조치로,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 중 광고심의위원회의 주체 및 구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광고심의위원회의 주체를 수의사회로 한정하고 그 구성도 수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국가기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

4) 헌법 제21조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상업적 목적인 광고도 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음.(헌법재판소 1998. 2. 27. 96헌바2 결정,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 외 다수.)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 중 심의기관의 행정기관성에 대하여 형식적인 기관의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기관의 역할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장석권,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2018. 9.)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나,

심사대상인 광고의 주체와 심사의 주체가 동일하여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주체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또한, 유사 입법례인 「의료법」을 참고하여, 광고심의위원회의 주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비자단체를 추가하여 독점적 광고심의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

5) 「의료법」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제57조제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2018. 5. 29. [발췌] ①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영 제24조)

○ (조직 및 요건)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의 난립 방지

- (조직)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 필요

-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 포함

정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의 위반 여부를 사전 심의할 필요성은 공감하나, 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대한수의사회는 현재 동물진료 광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진료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개정을 통해 동물진료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각 호 생략>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각 호 생략>

④ ~ ⑤ (생략)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④ ~ ⑪ (생략)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③ (생략)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광고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 ⑧ (생략)

제25조의2(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후 의료기기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 ⑥ (생략)

제25조의3(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기기 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 사항

② ~ ⑦ (생략)